긴급피난처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년 11월 8일 / 포항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11월 12일

다. 상정일자

O 제319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 11. 22.) 상정 . 질의답변 .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정연학 여성가족과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위기여성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임시보호한 후 상황에 따라 전문시설로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운영체 선정하여 폭력 피해 여성들의 다양한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제안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위탁 신청자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긴급피난처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다. 제안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0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제13조

3. 위탁 대상 시설 현황

O 위탁구분 : 신규위탁

○ 위탁시설 현황 : 북구 선착로 (비공개시설)

층 별	연면적(m²)	시 설 용 도
총 연면적	494.46	대지면적 371.9㎡, 시설면적 494.46㎡
1층	209.02	학대피해아동 쉼터
2층	199.12	폭력피해여성 긴급피난처, 사무실
3층	86.32	상담실(24시간 상담근무)

O 위탁기간 : 위수탁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위탁사무 : 긴급피난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임시피난처로써 숙식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동행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 조사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연계

■ 그 밖에 여성폭력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소재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상담소를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4.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요지(전문위원 : 김경희)

- 본 동의안은 폭력 피해 여성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운영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21년 여성 폭력실태조사¹⁾에 따르면 평생동안 폭력 피해(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경제적 폭력)를 겪은 여성은 34.9%에 달하고 그 중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여성은 26.4%에 달함.
- 2024년 상반기 포항시에서 발생한 여성²⁾관련 폭력은 967건으로 이 중 350건은 경북 1366센터를 통해 포항시로 의뢰된 건이고, 617건은 경찰을 통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연계된 건임.
-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9월 발표한 '2024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통해 최근 7년사이 성폭행, 교제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여성피해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포항시 긴급피난처는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여성과 동반가족이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로 머물 수 있는 임시 피난처로 민간 위탁을 통해 폭력 피해 여성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효율적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¹⁾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여성 7,000명. (95% 신뢰수준 ±1.58%p)

^{2) 2024}년 6월 30일 기준 포항시 여성 인구 242,302명 (19세 이상 여성 인구 : 207,314명)

- 5.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 6. 토론의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관계 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따른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수 있다. 〈개정 2024. 3. 26.〉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시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3. 7. 30., 2015. 6. 22., 2017. 12. 12., 2020. 6. 9.〉
 -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홍보
 -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7.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 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 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1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 2017. 12. 12., 2018. 3. 13.>
- ⑤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2., 2018. 3. 13.>

[전문개정 2007. 10. 17.]

-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13.〉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 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④ 상담소는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2., 2018. 3. 13.>
 - ⑤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2., 2018. 3. 13.〉

[전문개정 2007. 10. 17.]

-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하 "보호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전문개정 2007. 10. 1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6.〉
 -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 운영
 -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 연구, 교육 및 홍보
 -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2. 18., 2018. 3. 13.〉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신설 2018. 3. 13.〉
 - ④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신고체계의 구축· 운영
 - 2.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법령 정비 및 정책 수립
 - 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 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 밖의 지원 서비스 제공
 -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 6.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감시
 -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13.〉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지원시설의 설치기준·신고절차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
 -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 2.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에 보고한 경우, 다만, 공공시설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1.2.>
 -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최초 민간위탁시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무와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